▣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75호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등을 위한 「보험업법」이 '20.12.8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간 발표된 주요 정책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 설정 (안 제2-11조)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

나.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승인규제 정비 (안 제5-21조)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지급여력금액의 30%'로 상향

다. 보험회사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공시 (안 제7-46조)

보험회사가 반기별로 공시해야하는 항목에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kkhmarin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